

#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(10.2.) 조치 의결

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일 제17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티와이엠 등 3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또한,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비상장사인 라헨느리조트(주)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(위탁감리위원회)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태현수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신규종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강대민 (02-3145-7725)
		담당자	팀 장	이성진 (02-3145-7710)
<공동>	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	책임자	본부장	조점호 (02-3149-0353)
		담당자	팀 장	심수나 (02-3149-0368)

(붙임)

**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**  
(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4.10.2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b>(주)티와이엠</b>  결산기 : 2022.6.30. 2022.9.30. 2022.12.31.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업종 :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	<b>【회사】</b>  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(’22년 반기 64,017백만원, ’22년 3분기 49,551백만원, ’22년 온기 31,380백만원)  - 회사는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하여,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	<b>회 사 :</b>  - 과징금 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- 감사인지정 3년  - 담당임원 해임권고  - 시정요구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력슬(주)</p> <p>결산기 : 2018.12.31. 2019.3.31. 2019.6.30. 2019.9.30.</p> <p>코스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미수금 등 허위계상 (’18년~’19년 3분기 10,00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함</p> <p>② 선급금 등 허위계상 (’19년 1분기 200백만원, ’19년 반기 1,230백만원, ’19년 3분기 3,63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, 물품공급이나 자금대여 거래로 위장 후 선급금 등으로 허위계상함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증권발행제한 12월</p> <p>* 다만,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증권 증권의 사모발행(채권자 출자전환 포함),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前업무집행지시자 면직권고 상당</p> <p>- 前임원 해임권고 상당</p> <p>- 검찰고발 (前업무집행지시자)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력슬(주)	<p><b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b></p> <p>①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8년 10,000백만원)</p> <p>- 감사는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<b>인덕회계법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과징금</li><li>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li><li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%</li><li>- 력슬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</li></ul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력슬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</li><li>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li><li>- 직무연수 16시간</li></ul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력슬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</li><li>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li><li>- 직무연수 12시간</li></ul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<b>라헨느리조트(주)</b></p> <p>결산기 : 2017.12.31. 2018.12.31. 2019.12.31. 2020.12.31. 2021.12.31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 : 골프장 운영업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 (‘17년 7,056백만원, ‘18년 8,258백만원, ‘19년 9,643백만원, ‘20년 7,244백만원, ‘21년 8,63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일부 차입금에 대해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으며,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음</p> <p>②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 오류 (‘17년~‘19년 6,950백만원, ‘20년~‘21년 6,12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계약상 만기가 경과하고 각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차입금 등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라헨드리조트(주)	<p><b>【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】</b></p> <p>①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‘17년 7,056백만원, ‘18년 8,258백만원, ‘19년 9,643백만원, ‘20년 7,244백만원, ‘21년 8,630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②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‘17년~‘19년 6,950백만원, ‘20년~‘21년 6,124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<b>삼도회계법인 :</b>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</p> <p>- 라헨드리조트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</p> <p><b>공인회계사 2인 :</b></p> <p>- 라헨드리조트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</p> <p>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8시간</p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p>- 라헨드리조트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·코넥스상장 제외)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6시간</p>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